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0
----------	------

2022년 2월 1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1월 1일, 김정환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일자: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2월 10일 상정·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정환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저공해 조치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포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나. 주요골자

-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 함(안 부칙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현재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21.12월 ~ '22.3월)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계획(서울특별시, '21. 11월)'에 규정되어 있음.

#####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항목		내용
제한기간 및 시간		'21.12.1.~'22.3.31/평일 06~21시(토·일·공휴일 제외)
대상차량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약 100 만대
제외차량	법정제외 <sup>A</sup>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합의제외 <sup>B</sup>	장착불가 차량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조건부제외 <sup>C</sup>	수도권외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으나, '22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면제
단속 방법 및 지역		시 전역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해 실시간 단속
위반시 조치		과태료 10만원 부과 하루 최대 10만원,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 부과 가능

A: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제8호

B: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9호

C: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시행

-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저감조치<sup>1)</sup> 발령 시에도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이와 반대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과 같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중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바로잡아 업무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안 부칙 제2조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이외의 자동차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임. 이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과태료 부과면제 등의 별칙 규정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협의를 근거로 특례 조치를 시행<sup>2)</sup>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부칙 제2조>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발령됨.

- 당일 PM-2.5 평균 농도가 50 $\mu$ g/m<sup>3</sup> 초과,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mu$ g/m<sup>3</sup> 초과 예측
- 당일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mu$ g/m<sup>3</sup> 초과 예측
- 다음날 평균 농도가 75 $\mu$ g/m<sup>3</sup> 초과 예측

2)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 2022년 1월 1일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5조의2”를 각각 “제5조의2제1항”으로, 같은 항 중 “제5조제1항에”를 “제5조의2제1항에”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 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5조의2제1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5조의2제1항에 ----- ----- 제5조의2제1항에 -----.</p>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30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01일

발 의 자 : 김정환, 강대호, 강동길,  
김경영, 김기대, 김기덕,  
김인제,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송아량, 유정희,  
이광성, 장상기, 홍성룡  
의원(15명)

## 1. 제안이유

-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저공해 조치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포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부칙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5조의2”를 각각 “제5조의2제1항”으로, 같은 항 중 “제5조제1항에”를 “제5조의2제1항에”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u>제5조의2</u>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u>제5조의2</u>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u>제5조제1항</u>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u>제5조의2제1항</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5조의2제1항</u>에 -----</p> <p>----- <u>제5조의2제1항</u>에 -----.</p>

문서번호	2021120700000002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정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2.07	
회신일 : 2021.12.07	내용문의 : 02-2180-7954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
  - ※ 제10조제1항은 ‘제5조의2’에서 ‘제5조의2제1항’으로 과태료 적용대상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비용 증가 또는 세입 감소 미발생
  - ※ 제10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금액은 둘 다 건당 100천원으로 동일하므로 비용 증가 또는 세입 감소 미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533,018천원

- 예상되는 한시적 세입감소가 533,01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 한시적 발생(2021.12월 발생분도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저공해 조치, 행정처리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세입감소는 2022년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2021.12월~2022.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 대수는 2020.12월~2021.3월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차량 중 2021.11월말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3,760대로 전제
  - ※ 제2차(2020.12월~2021.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저공해 조치 현황  
(2021.11월말 기준, 단위 : 대)

구분	위반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저공해 미조치	
		계(B)	장치부착	조기폐차		
계	28,911	19,333	66.9%	7,031	12,302	9,578
서울	6,229	4,158	66.8%	960	3,198	2,071
인천	1,345	835	62.1%	188	647	510
경기	13,336	10,099	75.7%	4,188	5,911	3,237
수도권 외	8,001	4,241	53.0%	1,695	2,546	3,760

자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2021.12월~2022.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1대당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12월~2021.3월 전체 운행제한 위반 차량 중 2021.11월 현재까지 저공해 미조치한 9,578대에 부과된 과태료 총 건수 30,671건으로 나눠 해당 3.2건으로 전체(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는 별도 없음)

※ 제2차(2020.12월~2021.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  
(2021.11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부과대상	부과취소(저공해 조치)			실제부과(저공해 미조치)		
		계	취소종결	환급대상	계	납부	미납
건수	112,222	81,551	75,695	5,856	30,671	4,908	25,763
비율	100%	73%	67%	5%	27%	4%	23%

자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2021.12월~2022.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2022.9월까지 저공해 조치 비율은 2020.12월~2021.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2021.9월까지 저공해 조치완료 비율인 44.3% 적용

※ 제2차(2020.12월~2021.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월별 저공해 조치 현황  
(단위 : 대)

구분	위반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누적)							
		'21.4월	'21.5월	'21.6월	'21.7월	'21.8월	'21.9월	'21.10월	'21.11월
계	28,911	9,447 (32.7%)	11,476 (39.7%)	13,557 (46.9%)	14,938 (51.7%)	16,057 (55.5%)	16,868 (58.3%)	17,947 (62.1%)	19,333 (66.9%)
서울	6,229	2,279 (36.6%)	2,642 (42.4%)	2,941 (47.2%)	3,175 (51.0%)	3,393 (54.5%)	3,561 (57.2%)	3,790 (60.8%)	4,158 (66.8%)
인천	1,345	458 (34.1%)	519 (38.6%)	587 (43.6%)	630 (46.8%)	681 (50.6%)	723 (53.8%)	766 (57.0%)	835 (62.1%)
경기	13,336	5,594 (41.9%)	6,605 (49.5%)	7,519 (56.4%)	8,198 (61.5%)	8,712 (65.3%)	9,041 (67.8%)	9,509 (71.3%)	10,099 (75.7%)
수도권 외	8,001	1,116 (13.9%)	1,710 (21.4%)	2,510 (31.4%)	2,935 (36.7%)	3,271 (40.9%)	3,543 (44.3%)	3,882 (48.5%)	4,241 (53.0%)

자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제출자료를 재구성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533,01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 특례 (안 부칙 제2조)		△533,018	-	-	-	-	△533,018
	소계(a)		△533,018	-	-	-	-	△533,018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533,018	-	-	-	-	533,018

○ 과태료 특례 = 533,018천원

$$= \text{수도권 외 자동차 대수} \times \text{대당 과태료 건수} \times \text{건당 과태료} \times \text{저공해 조치 비율}$$

$$= 3,760\text{대} \times 3.2\text{건} \times 100\text{천원} \times 44.3\%$$

- ※ 수도권 외 자동차 대수 : 2020.12월~2021.3월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차량 중 2021.11월말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3,760대 적용
- ※ 대당 과태료 건수 : 2020.12월~2021.3월 전체 운행제한 위반 차량 중 2021.11월 현재까지 저공해 미조치한 9,578대에 부과된 과태료 총 건수 30,671건으로 나눠 대당 3.2건 산출
- ※ 건당 과태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목 100천원 적용
- ※ 저공해 조치 비율 : 2020.12월~2021.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2021.9월까지 저공해 조치완료 비율인 44.3% 적용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